의안번호	제529호
의 결	2013년 9월 일
연월일	(제323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 헌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8월 26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 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 발의연월일 : 2013년 8월 26일

발 의 자:정헌·황규철·권기수·김도경

유완백·윤성옥·이수완 의원 (7명)

1. 제안 이유

○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 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별표 2]의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으로 규정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별표 2]의 대상란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별표 1"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3조(투자유치위	제1조(목적) ~ 제3조(투자유치위
원회 설치) (생략)	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착·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해촉될수 있다.

관계 법 령

□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 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

- 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